

<제13호>

금융투자업자의 정관 변경 보고서

문서번호 : 기획-103-1707091

2017 . 3. 24.

수 신 : 금융감독원장

참 조 : 신탁업무팀장

사본수신 :

제 목 : 금융투자업자의 정관 변경 보고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 제2호에 따라 불
임과 같이 당사의 정관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.

붙 임 :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(주)무궁화신탁 대표이사 최 병 길



본점소재지: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-1 글라스타워빌딩 19층
작 성 자 : 경영기획팀 조민정 대리
전화번호 : 02-3456-0043

<붙임 2>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.

1. 정관변경사유

가. 사외이사 선임 규정 개정

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“지배구조법”) 제3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금융회사(기준: 자산총액 5조원 미만, 수탁재산 20조원 미만. 현재 자산총액 370억원, 수탁고 13.2조원)로서 제12조(이사회의 구성) 및 제16조(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)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임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관에 사외이사 규정(사외이사 3인 이상, 이사 총수의 과반 이상)을 두고 있으나, 정관 변경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및 운영에 재량 및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함.

나. 이사회결의 규정 개정

당사 정관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함을 허용하고 있는바, 해당 규정을 상법 제391조와 같이 음성 송수신 수단으로 완화하고자 함.



2. 주요 변경내용

- (별첨) 신구대조표 참조

■ 첨부서류

1. 정관 1부.
2.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.

(별첨) 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33조 (대표이사 등)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임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할 수 있다.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제36조의2(사외이사)</p> <p>① 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며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전 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p>③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제37조 (이사회의 소집, 의장 및 결의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33조 (대표이사 등)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<u>사내</u>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할 수 있다.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제36조의2(사외이사)</p> <p>① 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며,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회사는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전 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</p> <p>③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제37조 (이사회의 소집, 의장 및 결의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<u>동영상 및</u>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p>	<p>→ 현 법령에 맞추어 용어정리</p> <p>→ 사외이사 선임에 재량 및 탄력성 부여</p> <p>→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삭제</p> <p>→ 상법 제391조에 따라 완화</p>